2024년 김해보훈요양원 이용료 안내

□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(20%) 이용료(월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장기요양시설급여		본인 부담금			
	1일	30일	급여 (수가의 20%)	비급여 (급식, 간식비)	총 액	
					4인실	1인실
1등급	84,240	2,527,200	505,440	270,000	775,440	1,075,440
2등급	78,150	2,344,500	468,900	270,000	738,900	1,038,900
3~5등급	73,800	2,214,000	442,800	270,000	712,800	1,012,800

※ 비급여 : 식사비 1식 2,500원/간식비 1식 750원/상급 침실료 1인실 10,000원 (1일 기준)

□ 감경·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(4인실, 월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	① 일반인 감경대상자		② 60% 감면 보훈대상자		③ 80% 감면 보훈대상자	
		감경 40%	감경 60%, 의료급여	감경 40%	감경 60%, 의료급여	감경 40%	감경 60%, 의료급여
급여①	1등급	303,264	202,176	121,306	80,870	60,653	40,435
	2등급	281,340	187,560	112,536	75,024	56,268	56,268
	3~5등급	265,680	177,120	106,272	70,848	53,136	53,136
비급여②	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
총액 ① + ②	1등급	573,264	472,176	391,306	350,870	330,653	310,435
	2등급	551,340	457,560	382,536	345,024	326,268	326,268
	3~5등급	535,680	447,120	376,272	340,848	323,136	323,136

① 일 반 인 감경대상자: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닌, 일반인 본인 부담금 12%, 8% 해당자

② 60%감면 보훈대상자: 고엽제후유의증, 참전유공자, 무공·보국수훈자, 국가유공자 유족 등

③ 80%감면 보훈대상자: 전상군경, 애국지사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등

※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감경40%(본인부담금 12%), 감경60(본인부담금8%),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감면 적용되나, 애국지사 본인·배우자, 상이1급 본인,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의 경우 감경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감면 추가 적용

▸ 수가 2.3:1 / 2.5:1의 인력구조에 따라 금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